

3. 新都市 住宅分讓價 原價連動制 補完에 따른 細部施行方案

가. 택지와 관련된 기타경비 산정

1) 차수벽

하천변 등 당해택지의 특별한 토질조건 등으로 인하여 용수가 당해 택지로 유입되어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는 건축물의 기초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건축 기초공사로서 시공하는 방수 및 흙막이 공사비용은 제외함

2) 기초보강공사(연약지반)

사업지역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건축비 상한가격에 반영된 기초공사내역으로서는 공사가 불가하여 부득이 기초공사비가 초과하는 경우

3) 경비산정기관

국가, 공공기관 및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체로 등록된 업체, 다만 당해 주택건설사업주체와 동일 계열업체는 제외함.

나. 세부시행 내용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관계도면과 경비산정기관에서 작성된 경비산정 내역서를 제출

2) 주택분양가에 반영된 위 차수벽 및 연약지반 초과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조서에 의거, 중간·준공검사권자가 공사시공 내역을 확인하여 분양시 반영된 비용이 남을 경우에는 이를 입주자 잔금에서 정산토록 조치

다. 시행시기

90년 11월 분양시부터

(기 승인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추가경비내역을 '90. 11. 17한 제출요)

라. 기타사항

분양공고 및 계약조건에 명시